

전주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가단182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개명전 성명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85,081,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12.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 12. 3. 접수 제135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판사 이관용
- 별지